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05

발의연월일: 2021. 12. 15.

발 의 자: 송석준・박성민・金炳旭

박 진・권영세・유경준

김석기 · 추경호 · 성일종
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, 고령자 등의 승·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시내버스의 42%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되어있음.

그러나 2019년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이 26.5%에 불과하고, 53.9%를 도입한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30% 미만의 보급 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,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2022년~2026년)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·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 다만, 고속시외버스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걸로 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4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속시외버스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	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
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
	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
	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
	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저상버
	스로 도입하여야 한다. 다만,
	고속시외버스의 경우는 국토교
	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저상버스
	도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
	쳐야 한다.